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주요 법적근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 -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각호 주요내용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등의 행위)

○ 제1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항 -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제1항 -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항 -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 처리 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항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 제1항 -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청소를 업(이하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항 - 분뇨등 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화조를 청소하고,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축산폐수수집·운반업

축산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영업

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4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폐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8조 제1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각호내용 오수정화 미준공 사용자등)

2.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운 영상 조례규정에 불필요한 조항과 상위법에 제한하는 규제적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조항 일부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